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00

발의연월일: 2020. 8. 26.

발 의 자 : 안호영 · 송옥주 · 양이원영

이수진(11) • 윤미향 • 장철민

신정훈 · 맹성규 · 이동주

김윤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8. 5월 이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 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교육 실시 여부를 보고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사업장, 신고 사업장 등에 대해서만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있어 교육 의무 이행 확보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이에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교육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한편,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 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현장에서도 인식개선 교육 지도·점검 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자료 보관 의무 규정이 위탁 교육 에만 적시되어 있어 위탁 교육을 한 사업주만 자료 보관 의무가 있는 것처럼 보여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사업주의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 규정을 인식개선 교육 관련 모든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로도 보관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의무규정 적시 변경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규정도 변경하고자 함(안 제5조의2 및 제86조제2항제2호).

법률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43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 2제1항 중 "교육"을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제86조제2항제2호 중 "제5조의3제2항"을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5조의 3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법률 제17435호 장애인고용촉진 법률 제1743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 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 선 교육) ① -----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 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 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 육"이라 한다)-----신설> ----. 이 경우 상시 50명 이상 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 육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신 설>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

③ ~ ⑥ (생 략)

제86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u>제5조의3제2항</u>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③ ~ ⑤ (생 략)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
|---|
| 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
| $\underline{4}$ \sim $\underline{7}$ (현행 제3항부터 제6 |
| 항까지와 같음) |
| 제8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② |
| |
| |
| 1. (현행과 같음) |
| 2.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5조의 |
| 3제2항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